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70
----------	-------

발의연월일 : 2026. 6. 16.

발 의 자 : 엄태영 · 안철수 · 김상훈
김태호 · 윤한홍 · 이종배
박성민 · 이만희 · 권영진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됨.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동차 산업 전환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제3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p> <p>④ ~ ⑨ (생략)</p>	<p>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2029년 12월 31일</u>----- ----- -----.</p> <p>④ ~ ⑨ (현행과 같음)</p>